

중 앙 안 전 점 검 통 제 단

우 110-78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

/ 전화 (02)725-7777

/ 전송 725-8127

문서번호 안점통 06065-30

시행일자 1995. 6. 9. ()

(경 유)

수 신 수신처참조

참 조

취 급	국 무 총 리
보 존	
행조실장	6/8
조정관	6/8
부단장	6/8
서기관	6/8
기 안	문종덕
	별 조

제 목 : 제6회 중앙안전점검통제회의 결과 시달(국무총리지시 제1995-12호)

1. '95.6.8 「제6회 중앙안전점검통제회의」 결과에 따라 다음사항을 지시
하니, 그 시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.

가. 소관부처는 선박 및 항만시설, 지하철, 통신구 안전관리체계 개선계획
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재정경제원, 총무처등 관련부처에서는 예산, 인력등 적극 협조하기
바람

나. 해운항만청이 해상교통안전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추진키로 한
해난방지조정기구는 조속히 설치하고 해상안전관련부처에서는 등 운영에 적극 협조할 것

다.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철도 전동차량 표준화연구개발사업을 적극 추진
하기 바라며, 관계부처는 이에 협조하기 바람

라. 정보통신부장관은 통신시설은 국가기간 전산망으로써 그 중요성을 감안,
주기적인 점검 실시 등 통신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

문서번호 안전통 06065- / 전화 (02)725-7777 / 시행일자 1985. 6.

마. 장마기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교량·댐·제방·지하철공사장·
철도인근 폐광산 등 취약부분에 대하여 소관부처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안전점검이
내실있게 실시되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

바. 국민생활의 안전확보를 위하여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안전을 고려한
투자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함은 물론, 각종 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국민각자의 안전의식을
높이는 것이 시급하므로 정부, 기업, 개인등 모든 개별주체가 안전의식이 생활화될 수
있도록 관련부처에서 특별히 노력을 하시기 바라며, 특히 노동부에서는 안전문화정착운동
이 조기에 가시화 되도록 추진하고 전내각이 이에 동참할 것

2. 상기 '가'항에 대하여는 세부추진계획을 6.30일까지 제출하고, 분기별
추진실적을 분기 의월 10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정보통신부, 건설교통부,
해운항만청). 끝.

중 앙 안 전 점 검 통 제 회 의 의 장 국 무 총 리

수신처 : 가 11~67